

가.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취지 및 근거

- 입법예고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안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확보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한다.
- 법률을 비롯한 각종 법령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같은 영 시행규칙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보 등에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 입법예고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 전체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되,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및 단체에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입법예고문은 주민 누구나 입법취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고(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입법 주요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하고,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행정절차법」 제43조)
-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초일(공고일)은 불산입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됨에 유의하여 기간을 정해야 한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6조(입법예고 대상) ①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입법예고 제출의견의 처리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정리·분석하여 자치법규안에 반영여부를 검토·결정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

-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법예고 결과(예시) ▶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시 장애인 시설협회 (○○○)	○ 제9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공연장에 단체 입장시에는 입장후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 요구	○ 미반영 - 조례가 명시한 단체입장은 일반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며, 제출의견에 대하여는 공연장 운영시 고려할 사항임.

참 고

◀ 입법예고를 재 실시 하여야 하는 경우 ▶

-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1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제도는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초안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전제하는 것이므로, 재입법예고는 예고 후 발생한 모든 변경을 알리려는 취지라기보다는, 입법예고 후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변경이 발생하여 당초의 예고가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통지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다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와 당초 입법내용의 본질적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추가·변경된 내용과 당초의 예고내용의 관련성이 적어 당초의 입법예고를 통해서도 관련 이해관계자 등이 그 추가·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공 청 회

○ 공청회 개최 필요성 검토 등

- 조례안에 대하여 쟁점이 많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사회 이슈화 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입법안의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을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하는데,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공청회 결과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0조(공청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생략)